

##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

2023년 제3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3년 2월 3일

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임용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임용인원	직무내용	근무 예정부서
송무팀장	지방행정6급 (일반임기제)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송무업무 및 행정심판 관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주요 소송 직접 관리·수행</li><li>행정·민사소송 답변서, 준비서면 작성 및 검토</li></ul></li><li>민간위탁 MOU 등 협약서 심사</li><li>법률교육 및 법률해석 상담</li><li>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주재</li></ul>	인권 법무과

### 2. 임용근거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제25조의5, 제27조

나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
다.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)

라.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### 3. 응시자격 요건

가. 공통사항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」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연 령 : 20세 이상
- 성별·지역제한 : 없음(단,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#### <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>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#### <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>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나. 임용분야 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임용분야 (임용직급)	임 용 자 격
송 무 팀 장 (지방행정6급/ 일반임기제)	<p><b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○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○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ul> <p>※ 관련분야 :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, 법무법인, 법률사무소 등에서 법률자문·사무, 소송 등 실무경력</p>

※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**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기제, 한시임기제의 경우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**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5항)

※ **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**

※ **전임근무(1일 8시간)**가 아닐 경우,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(예시 : 주 20시간근무), 근무시간(주 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
#### 4. 시험방법

가.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

나. 2차시험 : 면접시험

- 대 상 자 : 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
- 면접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- 합격자 결정 :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
#### 5. 근무기간

○ 근무기간 : 1년간

-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

## 6. 보수수준

가.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직무비중·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 120%범위 내에서 책정

임용분야	예정직급	상한액	하한액	비고
총무팀장	지방행정6급 (일반임기제)	79,257천원	52,811천원	주40시간

나. 연봉외 급여 :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

## 7. 시험일정

가. 응시원서 교부 :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

나. 응시원서 접수 : 2023. 2. 13.(월) ~ 2. 15.(수) / 3일간

다. 접수처

- 방문접수 :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
- 우편접수 :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,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(우편번호 : 54994)

라. 접수방법

### ▶ (방문접수)

-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
- ※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(12:00~13:00제외) 내에만 접수 가능

### ▶ (우편접수)

- 우편접수(등기)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,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하여 동봉(현금 X)
- ※ **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**해야 하며,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.
- ※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(예시) '0000분야 응시원서 재중'

- 마. 서류전형 결과발표 : 2023. 2. 17.전후(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)
- 바. 면접시험 : 2023. 2. 21.전후(일정·장소 개별통보)
- 사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3. 2월 예정(전주시 홈페이지 공고)

## 8. 제출서류

- ※ 자격·면허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
- 가.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(별지 제1호서식)
- 나. 응시원서(소정양식, 공고문에 첨부) 1부
- 다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
- 라. 직무수행계획서 1부(A4 10매 이내 작성하고,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)
  - ※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
- 마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바.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) 1부
- 사. 최종학교 졸업(학위)증명서 1부
  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
  -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
- 아.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 - 근무부서.직책.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
  - 발행기관의 직인, 발급자 인,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
  - ※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
  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**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** 제출
  - ※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
  -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,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

- 자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
  - 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
  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
- 차. 해당 자격·면허증 (사본, 해당자에 한함)
- 카. 응시수수료 : 전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(전주시청 민원실)  
[5급 : 1만원, 6~7(나~다)급 : 7천원, 8~9(라~마)급 : 5천원]

## 9. 재공고 및 변경공고

- 가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(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)에는 원서 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
  - ※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
- 나.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

## 10. 기타(유의)사항

- 가.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.
- 나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동일회차 다른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다.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.**
- 라.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.
- 마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바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사.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.

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시험관련 문의 : 전주시 총무과 인사팀(☎ 063-281-2142)

- 업무관련 문의 : 전주시 인권법무과(☎ 063-281-2638)

붙임 별지서식 (1~7호 서식)